■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 <개정 2023. 3. 20.>

(앞쪽)

사업 연도	. . . ~ . . .	기부금명세서	법 인 명	
			사업자등록번호	

구 분		③과 목	④연 월	⑤적 요	기 부 처		⑧금 액	비 고
① 유형	②코드				⑥법인명 등	⑦사 업 자 등록번호 등		
⑨소계	가.「법인세법」 제24조제2항제1호의 특례기부금(코드 10)							
	나.「법인세법」 제24조제3항제1호의 일반기부금(코드 40)							
	다.「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제13항의 우리사주조합 기부금(코드 42)							
	라. 그 밖의 기부금(코드 50)							
계								

210㎜×297㎜[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작 성 방 법

1. ①유형란: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기부금은 "특례"로,「법인세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기부금은 "일반"으로, 그 밖의 기부금은 "기타"로 하고, 동일한 기부처에 대하여는 월별로 합계하여 적습니다. 다만, 기부처가 국가기관인 경우(고유번호증의 등록번호 중 가운데 번호가 "83"인 것을 말합니다)에는 최초 지급월을 적고 해당 사업연도의 합계액으로 적을 수 있으며, 이 경우 비고란에 "합계"라고 적어야 합니다.
2. ②코드란: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기부금은 "10",「법인세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기부금은 "40",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제13항에 따른 우리사주조합 기부금은 "42" 그 밖의 기부금은 "50"으로 적습니다.
3. ③과목란: 회사장부상 계정과목을 적습니다.
4. ⑥법인명등란: 법인명, 단체명, 상호 또는 성명을 적습니다.
5. ⑦사업자등록번호등란: 사업자등록번호, 고유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를 적습니다.
6. ⑧금액란: 가지급금으로 처리한 기부금 등을 포함하고 미지급분은 그 밖의 기부금에 포함시키며, 기부금을 금전 외의 자산으로 제공한 경우 해당 자산의 가액은 이를 제공한 때의 시가(시가가 장부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장부가액)를 적습니다. 다만,「법인세법」 제24조제2항·제3항에 따른 기부금은 이를 제공한 때의 장부가액으로 적습니다.
7. 금전 외의 현물기부의 경우에는 비고란에 자산내역을 간략히 적습니다.
8. ⑨소계란의 가.~다.에 해당하는 기부금 종류별 소계 금액은 기부금조정명세서(별지 제21호서식)의 각 해당란에 적습니다.
9. ⑨소계란의 라. 그 밖의 기부금 소계는 손금불산입합니다.